

#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발의연월일	2009. 10. .
발 의 자	안철우 의원 외 1

## 1. 제안이유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제반시책마련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가연성잡초 등은 모두 베기로 제거토록 하고, 산불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을 선정 시상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 토지 등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 토지 등”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인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거 등)** ① 군수는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체 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농기 허가를 신청하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마을단위 공동소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거요청을 지원한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15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환경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산·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환경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가 화기(화기) 및 인화(인화)·발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전문개정 2007.12.21]

제7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3.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 악취방지법

**제15조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